

금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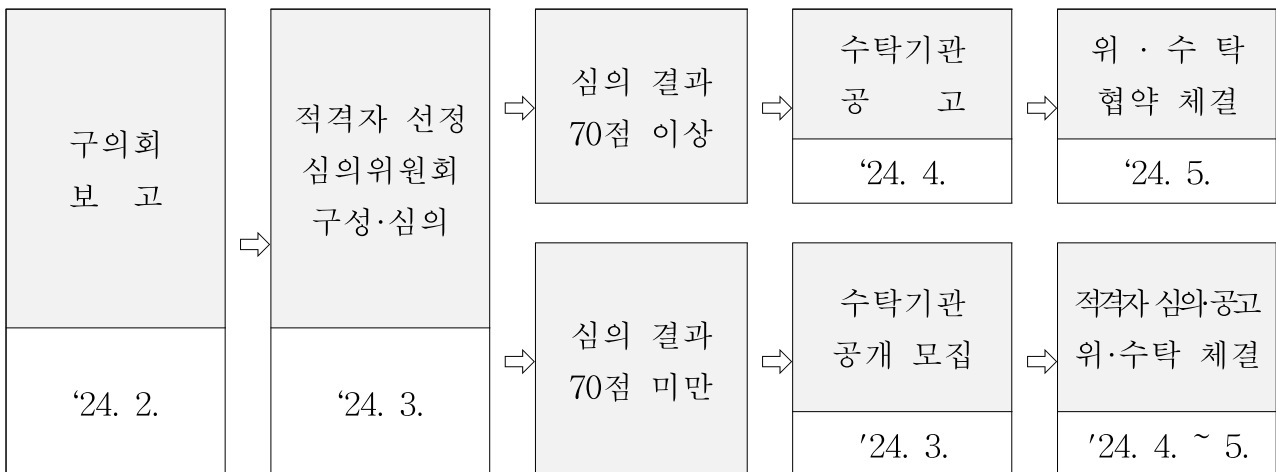
금천시니어클럽 위탁 수탁업체가 2024. 5. 31.자로 협약 만료됨에 따라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을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성과와 운영 능력을 심사하여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주요내용

- 가. 위탁 기간 : 2024. 6. 1. ~ 2029. 5. 31. (5년)
- 나. 심사 대상 :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 다. 위탁 사무 : 금천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 라. 선정 방법 :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항목별 채점표에 의거 심사
- 마. 추진 절차



바. 기존 위탁 현황

1) 시설 개요

기관명	소재지	설립일	대표자	위탁 개요	
				위탁체	위탁기간
금천시니어클럽	시흥대로 224, 5층 (시흥1동)	2019. 6. 1.	김선웅 (직원 20명)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이사장 이인재)	'16. 6. 1. ~ '24. 5. 31. (5년)

2) 위탁 업무

- 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기능 및 역할 수행
- 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 다) 지역사회 내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주요 사업 : 21개 사업, 참여자 1,410명

3) 위탁 심의 사유 :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재위탁 요건 충족(93점)

4. 재위탁 추진일정

가. 구의회 재계약 보고('24. 2. 중)

※ 복지건설위원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나. 수탁기관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24. 2. 말)

다.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24. 3. 중)

1) 위 원 : 7명(위원장 포함)

공무원(3)	구의원(2)	복지전문가(2)
국·과장 (복지가족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민간위탁 총괄 담당과장)	구의원 (의회 추천)	- 복지 관련 교수, 연구원 - 복지시설 운영자 - 현장실무 전문가

2) 심의 항목 : 3개 항목(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3) 심의 결과

- 가) 70점 이상 : 위·수탁 협약 체결
- 나) 70점 미만 : 수탁기관 공개 모집

라. 수탁기관 공고('24. 4. 중)

마. 위·수탁 계약 체결('24. 5. 중)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